

의안번호	2216191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2.
추 계 번호	26B0325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제1항(비용 부담 등)	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, 그 비용의 징수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의 예에 따름. 다만,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맹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<단서 신설>	의무·재량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제1항(비용 부담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기질평가 비용 지원(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)

- 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치도록 하면서,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¹⁾은 소유자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맹견²⁾에 한해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

1)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

제13조의2(기질평가비용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(이하 "기질평가"라 한다)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
2.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
3. 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

2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맹견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.

가.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

나.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

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맹견의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향후 기질평가 대상 맹견 수, 맹견 중에 따른 지원 기준·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, 개정안은 맹견의 월령, 건강상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³⁾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기질평가가 면제되는 맹견 수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등록된 맹견(1,656마리) 전체를 대상으로 기질평가 비용 25만원⁴⁾을 지원하는 경우 4억 1,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맹견사육허가 현황

(2025년 12월 기준, 단위: 마리)

등록	허가신청	허가	미허가		
			개체 있음	개체 없음 (사망 등)	확인중
1,656	393(23.7%)	348(21.0%)	474	504	33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맹견으로 지정한 개

- 3) 제18조(맹견사육허가 등)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맹견의 월령,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- 4) 현재 기질평가 관련 소유자 부담 비용은 최대 25만원으로 규정(기질평가 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, 농림축산식품부 고시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